

##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연구분과위원회 규정폐지규정(안)

### ○ 폐지이유

지방자치법(법률 제4,464호 '91.12.31)과 동법시행령(대통령령 第13,586號 '92. 2.15)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區議會에 常任委員會가 설치되므로 “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연구분과위원회규정”을 폐지하려는 것임.

### ○ 관련법규: 지방자치법(법률 제4,464호 '91. 12.31)

- 第50條(委員會의 設置)
- 동법시행령(대통령령 第13,586號 '92. 2.15)
- 第20條의2(시·군 및 자치구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)

##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연구분과위원회 규정폐지규정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연구분과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.

### 附 則

이 예규는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가改正公布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청원심사규칙(안)

### ○ 제정이유

'91.12.31. 法律 第4,464號로 改正公布된 地方自治法 第50條(委員會設置)에 우리區議會에도 常任委員會를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區議會에 접수되는 청원을 심도 있게 審查하기 위하여 기존규정을 폐지하고, “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청원심사규칙”을 제정하고자 함.

### ○ 주요골자

- |              |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|
| - 청원의 소개     | (제2조)  |
| - 청원의 회부     | (제5조)  |
| - 청원의 심사     | (제6조)  |
| - 심사보고       | (제11조) |
| - 청원인에 대한 통지 | (제12조) |

##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청원심사규칙(안)

第1條(目的) 이 규칙은 地方自治法 施行令 第24條의 规定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(이하 “議會”라 한다)에 提出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審查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을 목적으로 한다.

第2條(청원소개서등) ①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.

② 청원서에 첨부되는 소개하는 議員의 소개의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.

第3條(불수리사항의 통지) 議長은 청원이 청원법 第5條, 第8條 및 地方自治法 第66條에 해당되어 수리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第4條(이의신청) ① 청원이 청원법 第8條第1項의 规定에 해당되어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② 議長은 第1項의 规定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接受하여야 한다. 이 경우 議長은 그 청원을 회부할 所管常任委員會 또는 第5條第3項의 规定에 의한 特別委員會의 委員長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
第5條(청원의 회부) ① 議長은 청원을 接受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議員에게 인쇄·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所管常任委員會(이하 “委員會”라 한다)에 회부하거나,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本會議의 議決을 얻어 청원심사 특별위원회(이하 “委員會”라 한다)를 구성, 회부한다.

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, 성명, 청원의 취지,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.

③ 議長은 이미 설치된 委員會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委員會에 회부할 수 있다.

第6條(청원의 審查) ① 委員會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 중인 기간을 제외하고 10일이내에 審查結果를 議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.

② 委員會는 第1項의 기간내에 청원의 審查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議長에게 중간 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

수 있다.

第7條(소개의원의 취지설명) 청원을 소개한委員은 所管委員會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委員會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.

第8條(청원인등 진술) ①委員會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청원인,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者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.

②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, 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第9條(제척과 회피) ①議員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,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審查, 議決에 참여할 수 있다.

②本會議 또는 委員會는 第1項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議員이 청원의 審查, 議決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議員으로 하여금 審查, 議決하게 하여야 한다.

③第2項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議員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本會議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.

④第1項의 사유가 있는 議員은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審查, 議決을 회피할 수 있다.

第10條(本會議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)

委員會는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本會議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.

- 國家機關이나 麻浦區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

-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

- 청원의 취지가 國家 및 麻浦區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.

第11條(審查報告) ①委員會에서 本會議에서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議決한 청원은 그 審查結果를 議長에게 報告하고 議長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이내에 議長 또는 재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원을 本會議에서 부의

하여야 한다.

②委員會가 청원을 本會議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意見書를 첨부하여 本會議에 報告한다.

- 區廳長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

- 議會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

第12條(청원인에 대한 통지) 議長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.

- 청원접수 및 위원회에의 회부

- 委員會가 청원을 本會議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議決하여 議長에게 審查報告한 때

- 청원에 대한 本會議의 議決이 있을 때

- 區廳長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報告가 있을 때

- 第11條第2項第2號에 해당하는 청원이 本會議에서 처리되었을 때

第13條(청원의 철회)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 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提出하여야 한다.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한다.

第14條(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)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議員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당해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第15條(懲戒) 청원을 審查, 議決하는 第9條의 规定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地方自治法 및 議會會議規則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.

第16條(준용규정) 委員會의 構成, 運營등에 관하여 이規則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議會委員會條例와 議會會議規則을 준용한다.

#### 附 則

①(시행일) 이規則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規則 施行당시 종전의規定에 의하여 접수된 청원은 이規則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[별지제1호 서식]

## 청원 소개의견서

청원전명			
청원인	주소		
	성명		주민등록번호
소개의원	인		
소개년월일			

소개의견

[별지제2호 서식]

## 청원 철회 요구서

청원건명			
청원인	주소		
	성명	주민등록번호	
소개의원	인		
소개년월일	청원철회일자		

철회 요구 사유